

사단법인 한국스피치리더십개발원 정관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스피치커뮤니케이션의 참된 가치 창달을 위해 스피치리더십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**청소년 및 국민의 문화수준**을 높여 21세기 신지식인으로서의 평생교육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스피치리더십개발원(이하 ‘법인’ 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
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
제4조(사업)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.

1. 스피치리더십 프로그램 개발
2. 회원들의 전문성향상을 위한 상담, 연수 및 정보제공
3. 스피치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자료발간 및 홍보
4. 스피치리더십 관련 세미나 및 포럼
5. 국내·외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

제2장 회 원

제5조(회원자격)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.

② 이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.

제6조(회원의 권리)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,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다.

제7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.

1.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
2. 총회 및 이사회 의 결의사항 이행
3.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
제8조(회원의 탈퇴)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
제9조(회원의 제명)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·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.

제3장 임 원

제10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이사 5명
2. 감사 2명

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.

제11조(상임이사)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.

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.

제12조(임원의 임기) ① 이사의 임기는 4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다만, 최초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,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3조(임원의 선임방법)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.

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총원하여야 한다.

제14조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)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
다만,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
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15조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.

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(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)을 처리한다.

제16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7조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
1.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
3. 재산현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,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4.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

제4장 총 회

제18조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
2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3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4.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
5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6. 사업계획의 승인
7. 기타 중요한 사항

제19조(총회의 소집)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, 12월 중에,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.

제20조(의결정족수)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0조의 2(총회의 의사)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와 의장이 지명하는 약간명의 회원이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.

제21조(총회소집의 특례)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3.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
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

제22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제5장 이 사 회

제23조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

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
3.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4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5.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6. 기타 중요한 사항

제24조(의결정족수)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.

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25조(의결제척 사유)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26조(이사회회의 소집)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
제27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이사 과반수로 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
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증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28조(서면결의 금지) 이사회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
제6장 재산 및 회계

제29조(재산의 구분)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,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.

1.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2.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. 다만,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.
3.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
4. 세계(歲計)잉여금 중 적립금

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.

1.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.
2.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.

제30조(재산의 관리) ① 제28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,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법인이 매수, 기부채납,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.

③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, 보존 및 기타 관리 (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)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2 (현재의 기본재산목록)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31조(재산의 평가)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

제32조(경비의 조달방법)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사업수익,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.

제33조(회계의 구분)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,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.

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.

제34조(기부금 모금 및 공개) 이 법인의 목적사업 시행을 위하여 기부금을 모금 할 수 있으며,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해 3월 말 까지 공개한다.

제35조(회계원칙)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
제36조(회계연도)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37조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8조(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)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1. 이 법인의 설립자
 2. 이 법인의 임원
 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
 4.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-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제39조(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)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.

1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
2.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
3.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

제7장 사무부서

제40조(사무국)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

무국을 둔다.

-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
-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제8장 보 칙

제41(정관변경)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- 1. 변경사유서 1부
- 2. 정관개정안(신·구대조표를 포함한다) 1부
- 3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관련서류 1부
- 4.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, 처분 재산의 목록,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.

제42조(법인해산) ① 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,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한다.

제43조(잔여재산의 귀속) 이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귀속된다.

제44조(시행세칙)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)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.

직 위	성 명	주 소	직 업	임 기
회장	권재안	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35길 30-4, 401호(불광동, 장미파크빌)	국제스피치리더십개발교육회 대표	4
이사	박영환	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논골로 94번길 6, 401호 (단대동, 성보빌라)	국제스피치리더십개발교육회 운영위원	4
이사	최병태	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40, 705호(주엽동, 동주 오피스텔)	(주)아이디시스 경영	4
이사	강성희	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들말길 78	한국교통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지도자과정 외래교수	2
이사	최경애	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163, 우영주택 A동108호(효성동)	어린이집 원장	2
감사	김영미	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6, 111동 2003호 (주공아파트)	엘로리본어린이집 원감	2
감사	이희주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30번길 20-5, 204호(마두동)	한국지도자훈련원 자문위원	1

제4조(발기인의 기명날인)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
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.

직 위	성 명	날 인	비 고
발 기 인 대표	권재안		
발 기 인	박영환		
발 기 인	최병태		
발 기 인	강성희		
발 기 인	최경애		

【별지1】

설립당초의 기본재산목록

【법인명 : 사단법인 한국스피치리더십개발원】

재산명	종 별 (소재지, 지번, 지목)	수량	평 가 액(원)	비 고
현 금 (정기예금)	-이하공란-		-이하공란-	
채권 등				
주 식				
기타상품				
토지				
건물				
합 계	0		0	

【별지2】

현재의 기본재산목록

【법인명 : 사단법인 한국스피치리더십개발원】

재산명	종 별 (소재지, 지번, 지목)	수량	평 가 액(원)	비 고
현 금 (정기예금)	-이하공란-		-이하공란-	
채권 등				
주 식				
기타상품				
토지				
건물				
합 계	0		0	

